

2006 제1차 WTO/TBT 위원회



국제표준협력과 공업연구원 류경임
(02)509-4000 girhyu@mocie.go.kr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WTO/TBT 위원회 2006년 1차 회의에 우리나라 정부대표로 참가하여 의제별 논의 내용 및 우리 입장 개진
- 출장기간 및 출장지 : 2006.3.14(화) ~ 3.19(일) 스위스, 제네바
- 출장자 : 국제표준협력과 류경임 연구관,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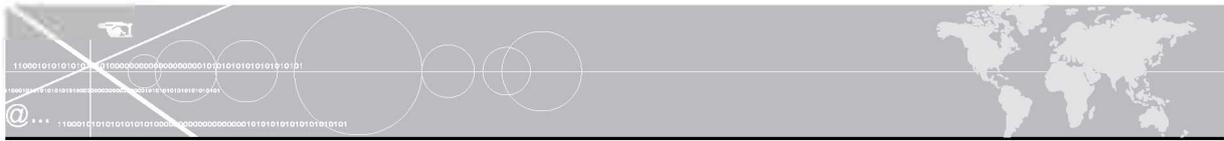
2. 2006년 제1차 WTO/TBT 위원회 개요

- 회의 일정 : 2006. 3. 15(수) - 17(금)
- 3.16(목) - 3.17(금, 오전)에는 적합성평가 워크숍 개최
- 회의 장소 : 스위스 제네바 William Rappard 센터
- 회의 참가자 : 국제표준협력과 연구관 류경임,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KIEP 남상열 연구위원

3. WTO/TBT 위원회 주요 회의 결과

□ TBT 협정이행 - 특정 무역관련 문제

- 회원국들의 통보문을 중심으로 무역관련 이슈들을 논의하였음
 - 유럽연합의 전자케이블 화재안전규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환경규제, 유럽연합의 전자케이블 화재안전규제, 중국의 무선 LAN에 대한 WAPI 보안표준, 중국의 가스용조리기구의 제품규격 개정, 중국의 전자정보제품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관련 규제, 인도의 다이어 인증 시스템, 유럽연합의 장난감 및 아동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금지, 미국의 에너지소비관련 규제 등 신규규제
 - 유럽연합의 REACH, Directive 2005/32/EC의 eco-design 요건 등 기존의 논의중인 규제
- 아국관련 무역이슈 논의
 - 뉴질랜드는 민대구머리에 대한 아국과의 양자간 대화가 아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동 회의에서 같은 수역에서 포획되는 민대구의 머리가 아국의 선박에 의한 경우와 자국 선박에 의한 경우가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부당성을 제기



- 이에 대해, 아국은 현재 양자간 대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국대표단이 관련 답변을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은 바, 동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함
- 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신규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아국의 2005년 12월30일자 관보 (No. 16160) 에 실린 동 규제에 대해 통보가 필요함을 지적
- 아국은 동 규제에 대한 청문회가 최근에 이루어졌음을 언급하고 2006년 3월 중에 WTO/TBT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60일 간의 코멘트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므로 코멘트를 제출할 회원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도록 제안함

□ TBT 협정의 이행 - 여타 사항

- 정보교환 절차에 대한 제5차 특별회의는 2007년 제1차 TBT 위원회와 연결해서 개최기로 하고 간사가 개도국의 참가지원을 추진하기로 함
- 캐나다는 호주와 의약품의 GMP 인증서 및 배치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WTO에 통보하였음을 전달

□ 제4차 3년주기 검토

※ 사무국이 작성한 제4차 3년주기 검토 기본문서 (안)(JOB(06)/24) 을 바탕으로 2005년 제3차 회의에서 합의한 5개 요소(GRP, 적합성평가, 투명성, 기술지원, 개도국특별대우)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 GRP(우수규제 관행)

- 대만은 GRP가 효과를 가지려면 국가차원에서 수용되어야 하므로 법적규제에 포함되어 들어갈 시간이 필요하며 GRP 이행에 대한 회원국간의 경험교환이 지속되기를 제안하여 동감을 얻었음 (G/TBT/W/261)
- 캐나다는 성능 중심의 규제(PBR) 활용 및 규제의 영향평가를 통한 가장 적절한 방법/제도의 선정 등을 촉구하고 이러한 방법/제도의 선전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GRP 워크숍의 개최를 4차 3년주기 검토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또한, 기존 규제의 단순화를 피하여 규제의 개수를 줄이고 국제표준의 개발현황을 반영할 필요성도 언급
- 말레이시아는 성능중심의 규제의 활용을 지지하면서 PBR 여부나 규제의 영향평가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개도국을 위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칠레는 한 국가 내에서도 규제당국간에 상이한 규제정책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규제당국간의 제도의 선택에 대한 조정의 중요성을 제기

○ 투명성 (Transparency)

- 대만은 TBT 협정문의 부록3 J항의 '표준화기관은 1년에 두번씩 표준화 작업계획을 ISO/IEC에 통보'하는 의무이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이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동 통보에 대한 디렉토리 발간과 통보내용을 볼 수 있는 웹주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 또한 협정문 10.7조에 의거한 회원국의 상호인정협정 체결현황에 대한 통보의 중요성을 4차 3년주기 보고서에서 언급할 것을 제안 (G/TBT/W/261)
- 말레이시아, 브라질, 칠레 등은 통보문의 원문 (ful. text) 제공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통보문에



원문(안)을 첨부하거나 관련자료를 볼 수 있는 웹주소를 명시할 것을 제안

- 중국은 통보문의 평균 코멘트 기간이 1995년의 52.3일에서 2005년 60.5일로 증가하였음을 반기면서도 2005년 통보문의 10%가 코멘트 기간이 45일 미만이었으며 8%는 코멘트기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해당없음'으로 명시하였는바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함
- 인도와 멕시코는 회원국간의 일관성을 위해 통보 대상과 통보문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성을 제시
- 칠레는 코멘트와 그에 대한 대응을 공표하여 코멘트의 반영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일본이 양자간의 협의는 기밀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들어 반대의사 표시

○ 기술지원

- EC는 개도국의 유럽시장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exporter's help desk' 를 운영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동 사이트의 활용을 촉구
- 이집트는 국제 인정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개도국 특별차등대우

- 멕시코가 특별차등대우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여타 논의는 없었음



○ 적합성 평가

- 대만은 SDoC를 적합성평가를 적용하는 회원국들은 동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제안
- 일본은 지정당국이 상대국의 절차에 따라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해주는 전통적 정부간

MRA가 협상 및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대안으로 상호교차인정 방식을 제안

- 유럽연합이 일본의 제안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인식함을 표명
- 미국, 멕시코 등을 포함한 여러 회원국들이 관련 부처와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공식적 의사표명을 유보

○ 4차 3년주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여타 의제

- 중국이 "표준화에서 IPR 이슈에 대한 background paper" 를 통해 TBT 위원회에서 동 이슈를 다루어야 할 합리성을 설명하여 브라질의 지지를 얻음.
- 멕시코와 미국이 TBT 논의 결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중국의 의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 중국은 TBT 협정이행에 필요한 표준과 IPR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을 4차 3년주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원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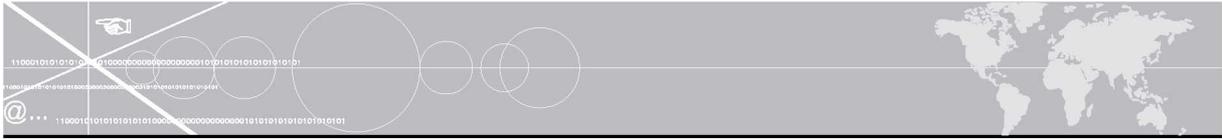
○ 4차 3년주기 검토보고서 기본문서 (JOB024)

- 금번 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무국에서 JOB024 수정본을 작성하여 회원국에게 회람 예정
- 관심 회원국은 4.15까지 코멘트 제출

□ TBT 핸드북 배포

○ 사무국에서 작성한 TBT 핸드북을 회의 기간중 배포함

○ 본 핸드북은 TBT 협정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이행을 작성되었으며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님



□ 제 11차 연례보고서 (G/TBT/18) 등

- 사부국이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수용함
- TBT 협정문 부록3의 우수관행규약 수용현황 (G/TBT/CS/Rev 12) 문서 수용
 - 159개 WTO 회원국중 111개국이 우수관행규약을 수용

□ 차기회의

- 2006.6.7~6.9(3일간) 개최키로 함

4. 평가 및 건의

- 민대구머리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회의 직전에 금번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와 아국대표단은 이미 양자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TBT 위원회에서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하였으나, 한국의 소극적인 내용으로 양자적인 협의에서 진전사항이 없음을 따라 TBT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국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려는 의도임을 강조
 - 동 사안이 TBT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되자 의장은 많은 회원들이 미소를 머금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EC와 노르웨이와 한국과 뉴질랜드가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전달한다. 해당부처는 뉴질랜드와 성실한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여 동 사안이 더 이상 TBT 위원

회에서 제기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

- ※ 동 사안에 대해 원활한 양자적 해결이 어렵다면 차기 회의에 해양수산부 대표가 참가하여 직접 대응해야 할 것임
- 일본이 APEC SCSC 회의('06.2.23-24, 베트남)에 이어 본 WTO/TBT 위원회에서도 아국 환경부의 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신규 규제에 대해 통보가 필요함을 지적해와
 - 아국 대표단은 동 규제에 대한 청문회가 최근에 이루어졌음을 언급하고 2006년 3월중에 WTO/TBT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60일 간의 코멘트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환경부에서는 3월 중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코멘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줄 필요가 있음

5. 향후 조치 계획

- TBT 전문가 회의 개최
 - TBT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제4차 3년주기 검토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 아국 권고안의 작성을 검토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TBT 위원회 논의 내용에 적합하게 대응토록 촉구
- TBT 통보문 운영 절차 개선
 - TBT 통보시 기술표준원 'TBT 통합웹사이트' 활용하여 기술규정 원문 세공(통보문에 관련웹사이트 명시)을 촉구
 - 아국 TBT 통보문에 대한 회원국들의 코멘트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코멘트 제출국에 전달